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의무보험 과태료	3
개요	3
보험가입대상	3
관련 법령	3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3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3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3
과태료 범침금 및 처분기준	4

##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차종	의무보험
일반소유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대인보험I, 대물보험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I, 대인II보험, 대물보험

##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덤프, 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관련 법령

### ◎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 ◎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하여 별표5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과태료 명칭 및 저분기준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일 이내</li> <li>▪ 대인I : 3만원</li> <li>▪ 대인II : 3만원</li> <li>▪ 대물 : 5천원</li> </ul> 10일 초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li> <li>▪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li> <li>▪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li> </ul>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일 이내</li> <li>▪ 대인 : 6천원</li> <li>▪ 대물 : 3천원</li> </ul>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	

GANGJIN

***Web Contents***

